금융기관지배구조가 내부통제품질에 미치는 영향

- 상호저축은행의 최대주주 지분율을 중심으로 -

유순미*

<요 약>

저축은행은 서민의 금융기관으로서 일반은행에 비하여 규모가 작고 상대적으로 리스크 관리도 취약하다. 또한 일반 은행과 같이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5천만원 이하의 예금은 보호되기는 하지만 일반서민이나 중소기업이 주된 고객이라는 점에서 일반 기업과 차이가 있다. 따라서 지배주주의 사적이익추구로 인하여 극단적으로 영업정지등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그로 인한 이익의 침해는 소액주주 이외에도 다수의 예금자, 정부, 일반 국민들도 잠재적인 피해를 볼 수 있고 그로 인한 공익비용은 일반기업보다 훨씬 크다 할 수 있다.

지배주주의 지분율과 관련한 가설로 이익침해가설과 이해일치가설로 상반되는 주장이 존재한다. 먼저, 외부소액주주들에 대한 지배주주의 이익침해가설(expropriation of minority shareholder hypothesis)에서는 지배주주의 지분율이 증가할수록 경영자는 이익을 증가시켜 보고할 유인이 있다. 또한 이해일치가설(convergence of interest hypothesis)은 지배주주 지분율이 증가함에 따라 경영자는 이익을 감소시켜 보고할 유인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상호저축은행 대상으로 최대주주 지분율이 기업의 내부통제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 최대주주지분율은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점 공시에 유의적인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최대주주지분율이 높을수록 회계투명성이 저하되어 내부통제의 질이 낮아져서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점 보고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핵심주제어: 상호저축은행, 지배구조, 최대주주,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점

논문접수일: 2015년 11월 16일 수정일: 2015년 12월 22일 게재확정일: 2015년 12월 24일
* 경상대학교 경영대학 회계학과 부교수, 경영경제연구소 책임연구원, smyu@gnu.ac.kr

Ⅰ. 서 론

2011년 입법예고된 “금융기관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2015년 7월 31일 최종적으로 확정되고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법안의 핵심은 금융회사의 이사회, 감사위원회, 내부통제제도, 위험관리제도, 임원 등으로 금융회사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소유구조와 관련된 내용으로는 주식취득에 의한 금융회사 대주주[1]의 변경승인요건과 대주주의 자격을 주기적으로 심사하는 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을 통해 금융회사의 건전 경영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다.[2] 이러한 금융회사 대주주의 적격성 유지 조건은 금융지주회사, 은행 이외에도 자산 3천억원 이상의 상호저축은행에도 적용된다.

상호저축은행은 서민의 금융기관으로서 일반은행에 비하여 규모가 작고 상대적으로 리스크 관리도 취약하다. 상호저축은행은 일반은행과는 달리 자체 신용평가시스템의 보유미비, 신용보증기관의 일반은행으로서의 보증업무 국한, 리스크 매니지먼트의 전문성 결여, 높은 수신금리에 따른 수신유치와 이에 수반한 높은 여신금리적용으로 인한 대출채권의 대손발생률 증가와 같은 경영상의 취약점을 안고 있다. 또한 현 일반은행이 비업무용 유가증권, 파생상품 투자와 관련된 전문인력 보유로 은행자산의 운용을 다각화 하고 있는 반면 상호저축은행은 관련 업무의 전문인력 부재로 오로지 예대마진에 의한 수익창출에 의존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상호저축은행의 지배구조를 보면 일부 개인, 일부 법인에 지분이 집중된 기형적인 지배구조로 소유자경영자의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숭용 2005). 또한 일반 은행과 같이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5천만원 이하의 예금은 보호되기는 하지만 일반서민이나 중소기업이 주된 고객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상호저축은행 지배주주의 사적이익추구로 인하여 극단적으로 영업정지등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그로 인한 이익의 침해는 소액주주 이외에도 다수의 예금자, 정부, 일반 국민들도 잠재적인 피해를 볼 수 있고 그로 인한 사회적비용은 일반기업보다 훨씬 크다 할 수 있다. 따라서 대형금융사고의 발생 방지, 소비자 피해의 보호 및 저축은행의 수익성 지속적 저하 등에 대응하기 위해 상호저축은행 자체적으로는 내부통제시스템이 적절히

1) 대주주"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주를 말한다.
가. 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그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을 합하여 그 수가 가장 많은 경우의 그 본인(이하 "최대주주"라 한다)
나. 다음 각 ① 및 ②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주요주주"라 한다)
①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그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자
② 임원(업무집행책임자는 제외한다)의 임면(任免) 등의 방법으로 금융회사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로 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할 대주주의 범위는 최대주주 1인이다. 법인이 최대주주일 경우 법인의 최대출자자 1인이 해당된다. 금융기관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31조에 따르면 주식취득으로 금융회사의 대주주가 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위한 요건(변경승인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승인 없이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 행사가 되지 않으며, 금융위원회는 이들 주식에 대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처분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또한 제32조에서는 금융위원회는 대주주에 대하여 일정기간마다 변경승인 요건 중 일정한 요건(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을 갖추어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심사해야한다. 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금융위원회는 대주주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유지조건을 충족시키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주주는 명령받은 날부터 이행하는 날까지 10% 이상의 주식에 대해 의결권 행사가 금지된다. 해당 명령의 불이행시 금융위원회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을 처분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동 명령 불이행시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징수가 가능하다.

설계되고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되어야 하며, 감독당국에서는 상시적인 금융감독 체제를 구축함으로서 대형 금융사고의 예방 및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 시켜야 한다.

실제 2011년 이후 대규모 영업정지와 구조조정으로 큰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저축은행 사태는 저축은행의 부실 경영에 대한 정책 및 감독성의 취약성 외에도 대주주 및 경영자의 사적이윤 추구를 위한 불법 부당한 저축은행 사금고화가 심각한 수준임을 드러냈다. 이러한 대주주 및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는 특히 저축은행의 규모가 빠르게 성장함과 동시에 소유가 계속 집중되어 대주주의 지배권이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하는 내·외부 장치들, 즉 지배구조나 외부감독이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면서 대주주 및 경영진의 과도한 위험추구 및 불법·부당 행위는 계속 이루어졌다. 실제로 2006년부터 영업정지된 모든 저축은행들이 불법대출에 연루되었으며, 동 불법 행위들을 다단계 자금세탁이나 회계기록 조작을 통해 은폐하였다. 이러한 은폐가 가능했던 것도 결국 저축은행 대주주 경영자의 지배권이 매우 높게 형성되고 이에 대한 감독당국 및 시장의 감시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데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이시연, 2012).

한국기업의 소유구조상 가장 큰 특징은 지배주주의 지배체제라고 할 수 있으며 기업설립자 또는 그 직계가족으로 대표되는 지배주주는 전체 발행주식수에 비해 미미하지만 최대지분을 보유하고 직·간접적으로 경영에 참여하여 기업경영에 대해 전적인 통제권을 행사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경영방식은 투명성과 신뢰성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유발하며, 경제적 비효율성을 야기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정구열 등, 2002).

지배주주가 보호막효과 및 사적정보효과를 통해 기업의 통제권을 효과적으로 지배하면, 자신의 사적 효익을 위해 외부소액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의사결정을 내리는 상황에서도 일반적인 지배주주의 내부 감시장치인 이사회 또는 내부통제제도 등이 재대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며, 지배주주가 이 두 효과를 통해 사적 이득을 획득할 기회가 존재한다면, 지배주주는 외부소액주주의 효익을 희생시키기 위해 이익조정과 같은 도덕적 해이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Jensen and Meckling, 1992; Christie et al., 1993; 안홍복, 2004). 특히 기업의 중요 의사결정 및 통제권을 소수의 지배주주에게 집중시켜, 기업의 중요활동이 경쟁기업에 누설되거나 이러한 특수 정보의 유출로 인한 사회비용 부담을 회피할 수 있도록 기업의 중요 정보를 사적으로 통제하는 사적정보효과(private information effect)는 아시아 국가와 같이 소유권이 소수의 가족 또는 지배주주에게 집중화된 기업 지배구조 하에서 더욱 두드러지며, 투명한 정보흐름이 제한됨으로써 기업의 이익정보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Fan and Wong, 2002). 실제로 국내 저축은행의 소유구조는 지배권이 동일 주주에게 크게 집중되어 있어 효과적인 외부견제나 감시 기능이 작동하지 못할 경우 지배주주의 이익에만 크게 치우친 경영 의사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내부통제가 취약할 경우 절대적 지배권을 가진 대주주 경영자에 의한 의도적인 허위표시의 가능성이 높아지며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금융당국에서 요구하는 BIS비율 등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회부불능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등과 같은 중요한 회계추정치를 이용하여 기회주의적인 조정 등이 가능하며(지현미・박홍조, 2006), 반드시 기회주의적인 조정을 통한 사적이윤 추구가 아니더라도, 고위험 추구에 따른 잔여이익을 향유할 수 있어 보다 높은 위험을 선호할 수 있다. 또한 불완전한 업무분장으로 인한 취약한 내부통제는 모니터링을 위한 충분한 인원부족이나

대주주에 대한 통제불능으로 자산횡령과 기록조작 등을 적발하지 못할 수도 있다(Doyle et al., 2007).

저축은행의 경우 애초부터 일반은행과 달리 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규제가 적용되지 않았으며, 부실저축은행의 구조조정을 위하여 허용한 저축은행 계열화 및 동일주주에게 집중된 소유구조의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각종 언론이나 기관 등에서 그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저축은행의 지배구조에 대한 국내 연구는 일반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한 연구에 비해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상호저축은행 대상으로 최대주주 지분율이 기업의 내부통제 품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 실증적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 최대주주지분율은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점 공시에 유의적인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최대주주지분율이 높을수록 회계투명성이 저하되어 내부통제의 질이 낮아져서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점 보고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저축은행의 최대주주지분율이 높을수록 지배권 남용과 도덕적 해이 가능성이 높아져서 기회주의적인 조정이 가능하다는 이시연(2012)의 주장에 대한 실증적인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결국, 저축은행의 소유구조의 분산이 시급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한편, 본 연구는 김용식 등(2007)에서는 지배주주와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 지분율이 증가함에 따라 취약점이 보고될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연구결과와 상반되는 결과이다. 이것은 김용식 등(2007)의 연구는 금융기관이 아닌 비금융기업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표본의 차이로 인한 결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최근 금융기관의 지배구조 개선 및 내부통제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보다 절실하게 제기되는 시점에서 보다 시의적절한 연구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실증적인 증거는 감독 및 규제당국의 법안 설계 및 운용단계에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Ⅰ장 서론에 이어, 제Ⅱ장에서는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제Ⅲ장에서는 본 논문의 연구설계를 제시하고, 제Ⅳ장에서는 실증분석결과를 보고하고, 마지막으로 제Ⅴ장에서는 결론을 제시한다.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1. 지배구조

지배주주의 지분율과 관련한 상반되는 가설로 이익침해가설과 이해일치가설이 존재한다. 먼저, 외부소액주주들에 대한 지배주주의 이익침해가설(expropriation of minority share- holder hypothesis)은 소유주와 외부투자자간 정보불균형 및 도덕적 해이 등의 문제로 말미암아 경영권방호(management entrenchment)현상이 생긴다는 것이다. 기업의 외부투자자의 부를 극대화하기 보다는 지배주주의 부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투자의사결정이 내려지게 되며 외부투자자들은 이러한 행위를 적절히 감시하지 못하고 결국 경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떨어진다. 이 경우 채권자나 투자자는 기업과의 계약에 각종 회계상 제약조건을 부과함으로써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하려하고, 지배주주는 외부자에 의하여 부과된 회계상 제약조건을 피하기 위하여 이익조정이라는 수단을 동원할 것이므로 그 결과 회계정보의 신뢰도는 감소하게 된다(Morck et al., 1988; 정구열 등, 2002).

지배주주의 이익침해가설을 지지하는 연구로, La Porta et al.(1999, 2000) 및 박종일(2003) 등

이 있다. La Porta et al.(1999)은 대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지배구조 차이를 실증적으로 비교 조사하였는데, 기업의 소유구조가 집중될수록 외부소액주주들에 대한 법적인 보호가 약한 특징이 있고, 이 경우 경영자나 지배주주는 자기 자신의 효용을 증대하기 위하여 기회주의적인 행동이 증가함에 따라 외부소액주주들에 대한 이익침해가 더욱 심화된다는 것이다. La Porta et al.(2000)은 외부소액주주들에 대한 법적인 보호가 약한 환경에 있는 국가들은 그렇지 않은 국가들에 비해 경영자나 지배주주의 기회주의적인 이익조정 유인이 보다 큰 것으로 보고하였다.

Jensen and Meckling(1992)과 안홍복(2004)는 지배주주가 보호막 및 사적정보효과를 통해 기업의 통제권을 효과적으로 지배하면 자신의 사적 효익을 위해 외부소액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의사결정을 내리는 상황에서도 일반적인 지배주주의 내부 감시장치인 이사회 또는 내부통제제도 등이 재대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며, 지배주주가 이 두 효과를 통해 사적 이득을 획득할 기회가 존재한다면, 지배주주는 외부소액주주의 효익을 희생시키기 위해 이익조정과 같은 도덕적 해이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Fan and Wong(2002)은 기업의 중요 의사결정 및 통제권을 소수의 지배주주에게 집중시켜, 기업의 중요 활동이 경쟁기업에 누설되거나 이러한 특수 정보의 유출로 인한 사회비용 부담을 회피할 수 있도록 기업의 중요 정보를 사적으로 통제하는 사적정보효과(private information effect)는 아시아 국가와 같이 소유권이 소수의 가족 또는 지배주주에게 집중화된 기업 지배구조 하에서 더욱 두드러지며, 투명한 정보흐름이 제한됨으로써 기업의 이익정보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박종일(2003)은 우리나라의 재벌 및 대주주 경영자 위주에 따른 기업지배구조에서는 지배주주와 외부소액주주들 간의 이해상충이 보다 심화될 수 있으며 재벌경영체계 및 소유경영자 위주로 경영활동이 운영된다는 점은 경영자가 다양한 이유에서 자본시장에서 보고이익을 조정한 유인이 높다고 주장하였다. 분석 결과, 최대주주 지분율과 경영자의 회계선택이 반영된 재량적 발생액 사이에 유의적인 양(+)의 관련성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안홍복(2004)은 지배주주의 지배-소유권 차이 심화와 이익조정 사이에 유의한 관련성을 주장하였으며 박승식 등(2006)과 안홍복·서란주(2013)는 기업의 대주주지분율이 증가할수록 경영자는 시장이나 소액주주 보다 지배주주의 입장에서 정치적 비용 감소를 추구하거나 자기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재량적 발생액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하였고, 특히 가족기업과 같이 주요 대주주간 지배권 연합이 가능한 경우에는 담합 등을 통한 이익조정을 증가시키게 되어 대주주 지분율과 이익조정 사이에는 유의한 양(+)의 상관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소유주 지분이 증가할수록 대리인비용이 감소하기 때문에 소유경영자와 외부자간의 이해관계의 일치의 정도(convergence of interest)가 높아지고, 외부투자자는 지배주주가 기업가치 극대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인식하여 계약상 제약조건을 덜 부과함으로써 지배주주는 이익조정의 유인이 적어지고, 결과적으로 이익의 질이 증가할 것이라는 이해일치가설(convergence of interest hypothesis)이 존재한다. 최성규·김경민(2001)은 소유와 경영의 분리정도를 소유자 지배기업과 경영자 지배기업으로 양분하여 분석한 결과 소유자 지배기업이 대리인 비용이 낮게 발생하여 주주의 부가 증가되고, 재량적발생액의 절대값도 경영자 지배기업 보다 더 작게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 그들은 주주가 분산된 경영자 지배기업의 개별주주들은 경영자를 효과적으로 감시하거나 감독할 의향과 능력이 부족하기 때

문에, 경영자는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 하기 위해 더 많은 재량권 행사 등을 통한 이익조절행위를 할 유인이 높고, 결과적으로 '전문경영인기업'이 '오너경영인기업'보다 이익조작이 더 심하며 이에 따라 회계이익의 정보유용성이 더 낮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김용식 등(2007)에서는 소유구조의 영향력을 검정한 결과, 지배주주와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 지분율이 증가함에 따라 취약점이 보고될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영자 지분은 일정수준의 지분까지는 지분의 증가에 따라 취약점이 보고될 가능성이 감소했지만, 일정수준 이상의 지분을 넘어서게 되면 반대로 지분의 증가에 따라 취약점이 보고될 가능성은 증가하였다.

기타 금융기관의 소유구조와 기업성과 및 기업실패와 관련된 국내외 선행연구로는 Cornett et al.(2009)은 기업지배구조가 미국의 상장 대형 금융지주사들의 이익과 이익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하였다. 분석 결과, CEO 성과지급민감도, 이사회 독립성과 자본은 이익과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또한, CEO 성과지급민감도는 이익조정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이사회 독립성·자본은 이익조정과 음의 상관관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이사회가 더 독립적일수록 CEO성과지급민감도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이익조정이 어려워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Cole and White(2012)는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한 은행 도산들의 직접적인 원인을 찾아보고 은행부실을 예측할 수 있는 대안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전통적인 은행경영실태평가 대용치인 CAMELS요소들 (1. 자본적정성, 2.자산건전성, 3. 경영관리능력 4. 수익성, 5.유동성, 6.시장리스크 민감도)과 상업용 부동산투자 등이 1985년~1992년 은행 위기시에 그랬던 것처럼 2009년에 도산한 은행들의 실패원인을 정확히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으며 상업용 부동산대출의 집중도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Berger et al.(2014)는 최근 금융위기동안의 은행 디폴트에서 은행의 소유구조와 경영구조가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분석 결과, 부사장과 같은 낮은 수준의 경영자가 은행의 지분을 보다 높게 보유하고 있는 경우 (high shareholdings of lower-level management)은행의 디폴트위험을 유의적으로 증가시킨다는 것을 발견하였으며. 반대로 외부이사와 주요임원(CEO, CFO 등과 같은 핵심지위에 있는 경영자)의 지분보유는 은행의 실패가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은행의 높은 지분은 도덕적 해이 유인으로 인하여 높은 위험을 감수하는 경영을 유발함으로서 은행의 디폴트는 소유구조에 강하게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하였다. 최미화(2012)는 기업의 대주주지분율이 높을수록 높은 감사품질을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외국인지분율의 경우에는 감사품질과의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성욱(2015)은 대리인 문제가 큰 기업의 경우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판매관리비의 하방경직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리인 문제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지배구조가 판매관리비의 원가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경영자의 대리인 문제에 효과적인 지배구조를 가진 기업일수록 대리인 문제에 기인한 판매관리비의 하방경직적 원가행태가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내부회계관리제도

상호저축은행법에서는 내부통제와 관련하여 2010년 3월에 구제적인 사항을 개정하였다. 개정된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3에 따르면 상호저

축은행은 법령을 준수하고, 자산 운용을 건전하게 하며, 거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을 정하여야 하며, 상호저축은행은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그 위반 사항을 조사하여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자(이하 "준법감시인"이라 한다)를 1명 이상 두어야 하며, 준법감시인을 임면하려면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3)]

상호저축은행법에서 별도의 내부통제기준이 적용되기 전까지 상호저축은행은 외감법에 도입된 내부회계관리제도[4)]를 적용하고 있었으며 상대적으로 그 설계 및 운용이 간소화된 “중소기업용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이 적용되고 있었다. 외감법상의 내부회계관리제도와 상호저축은행법상의 내부통제기준에 큰 차이가 없지만 좀 더 업종의 특성을 반영하여 구체화했다는 점과 외감법상의 ‘내부회계관리자’를 상호저축은행법상에서는 ‘준법감시인’으로 칭하고 그 자격요건에 대해 좀 더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의견은 상호저축은행의 대부분이 중소기업에 해당되어 중소기업용 간소화된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법규준”에 따라 감사인은 검토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표 1>의 상호저축은행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점 공시추이를 살펴보면 2006년부터 2012년까지 19.4%가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이 감사보고서에 첨부되지 않았거나 또는 감사보고서가 공시되지 않았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상호저축은행법에서 자체 내부통제기준이 적용된 2010년 이후 보다 많은 상호저축은행이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을 공시하지 않았다. 또한 취약점을 공시한 저축은행은 전체의 5.2%로 일반기업과 유사한 수준이었고 취약점 공시 이후 영업정지를 당한 저축은행은 2.3%로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점 공시이후 44.7%에 해당하는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를 당하였다.

또한 취약점이 공시되지 않은 상호저축은행은 75.4%이나 이후 영업정지를 당한 상호저축은행은 20.1%나 되었다. 다시 말해 취약점이 공시되지 않은 상호저축은행 중에서 26.6%에 해당하는 저축은행이 이후기간에 영업정지를 당하였으며 영업정지 직전년도까지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에 중요한 취약점이 한번도 발견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

3) 또한 동법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면 내부통제기준에는 ① 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에 관한 사항, ② 자산의 운용 또는 업무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의 관리에 관한 사항, ③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에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 ④ 경영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체제의 구축에 관한 사항, ⑤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나 방법 및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임직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 ⑥ 임직원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나 기준에 관한 사항, ⑦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또는 변경절차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내부통제기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면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4) 2005년 초 외감법에 도입된 내부회계관리제도는 회사가 작성한 재무제표의 신뢰성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을 제공하기 위해 설계·운영되는 내부통제이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이사회, 경영진 등 모든 조직구성원에 의해 회계기간 중에 지속적으로 실행되는 과정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자산의 보호 및 부정방지 프로그램을 포함하며, 운영목적이나 법규준수목적과 관련된 통제절차가 재무제표의 신뢰성 제고와 관련된 경우 해당 통제절차도 내부회계관리제도에 포함된다. 이 규정에 따르면 자산 1,000억원 이상인 외부감사 대상기업은 회계정보의 진실성 및 정확성 유지를 위한 내부회계관리규정을 마련하여야 하며, 상근이사 중 1명을 내부회계관리자로 지정하여 이사회 및 감사에게 운영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상장 및 등록기업은 사업보고서에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CEO 및 CFO의 인증을 의무화하며, 외부감사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검토의견에 반영하여야 한다.

<표 1> 상호저축은행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점 공시추이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계	비율(%)
검토의견 미공시	12	10	8	14	26	35	38	143	19.4
취약점공시	7	3	7	6	5	7	3	38	5.2
이후 영업정지	3	1	4	2	3	4	0	17	2.3
이후 계속영업	4	2	3	4	2	3	3	21	2.8
검토의견 적정기업	88	95	92	86	75	63	57	556	75.4
이후영업정지	28	30	27	27	21	10	5	148	20.1
이후계속영업	60	65	65	59	54	53	52	408	55.4
계	107	108	107	106	106	105	98	737	100

또한 표본기간에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에 취약점이 발견되었으나 다음연도에는 이러한 취약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가 몇 년 뒤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물론 영업정지가 상호저축은행의 결정적인 파산은 아니지만 중요한 경영상황의 정지 등이란 측면에서 본다면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에서 적정의견을 받은 상호저축은행이 이후에 영업정지를 받는다면 과연 당초 제시된 경영자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와 감사인의 검토의견이 제대로 된 것인지에 대해 의구심이 제기된다. 상호저축은행은 일반은행과는 달리 규모가 작고 자체 신용평가시스템의 보유미비, 신용보증기관의 일반은행으로서의 보증업무 국한, 리스크 매니지먼트의 전문성 결여 및 대출채권의 높은 대손가능성 등의 경영상의 취약점을 안고 있다. 상호저축은행의 영업정지 등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일반기업과 달리 그로 인하여 소액주주 이외에도 다수의 예금자, 정부, 일반 국민들도 잠재적인 피해를 볼 수 있어 사회적비용은 일반기업보다 훨씬 크다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상호저축은행 자체적으로는 내부통제시스템이 적절히 설계되고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되어야 하고, 외부감사인은 이에 대한 적정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을 표명하여야 하며 감독당국에서는 금융감독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상시적으로 적정수준의 내부통제 품질을 관리하여야 한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취약점과 관련된 선행연구로 Ge and McVay(2005)는 내부통제 취약점을 보고한 기업의 사업내용이 복잡할수록,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수익성이 낮을수록, 외부감사인이 대형회계법인일수록 내부통제의 중요한 취약점이 더 많이 보고되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Doyle et al.(2007)은 내부통제 취약점과 발생액의 질 간의 관계를 검토하였는데, 내부통제 취약점 공시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낮은 발생액의 질을 보였고 이러한 관계가 특정계정수준의 취약점이 아니라 전반적인 기업수준의 취약점에 의해 발생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신현걸(2007)은 표본기업의 2.6%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중요한 취약점을 보고하였거나, 검토의견표명이 거절되었으며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수익성이 낮을수록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중요한 취약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Ⅲ. 연구설계

1. 가설설정

정구열 등(2002)은 지배주주의 지분율이 증가할수록 경영자는 이익을 증가시켜 보고할 유인이 있어 결국 외부소액주주들에 대한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익침해가설과 지배주주 지분율이 증가함에 따라 경영자는 이익을 감소시켜 보고할 유인이 있다는 이해일치가설로 상반되는 가설을 주장하였다.

만일 이익침해가설이 우세하여 지배주주가 보호막 및 사적정보효과를 통해 기업의 통제권을 효과적으로 지배하면, 자신의 사적 효익을 위해 외부소액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의사결정을 내리는 상황에서도 일반적인 지배주주의 내부 감시장치인 이사회 또는 내부통제제도 등이 재대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며, 지배주주가 이 두 효과를 통해 사적 이득을 획득할 기회가 존재한다면, 지배주주는 외부소액주주의 효익을 희생시키기 위해 이익조정과 같은 도덕적 해이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또한 기업의 중요 의사결정 및 통제권을 소수의 지배주주에게 집중시켜, 기업의 중요 활동이 경쟁기업에 누설되거나 이러한 특수 정보의 유출로 인한 사회비용 부담을 회피할 수 있도록 기업의 중요 정보를 사적으로 통제하는 사적정보효과(private information effect)는 아시아 국가와 같이 소유권이 소수의 가족 또는 지배주주에게 집중화된 기업 지배구조 하에서 더욱 두드러지며, 투명한 정보흐름이 제한됨으로써 기업의 이익정보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Jensen and Meckling, 1992; Christie et al., 1993; 안홍복, 2004). 특히, 현재 국내 저축은행의 소유구조는 지배권이 동일 주주에게 크게 집중되어 있어 효과적인 외부견제나 감시 기능이 작동하지 못할 경우 지배주주의 이익에만 크게 치우친 경영 의사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내부통제가 취약할 경우 절대적 지배권을 가진 대주주 경영자에 의한 의도적인 허위표시의 가능성이 높아지면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금융당국에서 요구하는 BIS비율 등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회부불능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등과 같은 중요한 회계추정치를 이용하여 기회주의적인 조정 등이 가능하다(지현미·박홍조, 2006). 또한 반드시 기회주의적인 조정을 통한 사적이윤 추구가 아니더라도, 고위험 추구에 따른 잔여이익을 향유할 수 있어 보다 높은 위험을 선호할 수 있으며 불완전한 업무분장으로 인한 취약한 내부통제는 모니터링을 위한 충분한 인원부족이나 대주주에 대한 통제불능으로 자산횡령과 기록조작 등을 적발하지 못할 수도 있다.

한편, 김용식(2007)과 최성규·김경민(2001)에서는 지배주주와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 지분율이 증가함에 따라 취약점이 보고될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유자 지배기업이 대리인 비용이 낮게 발생하여 주주의 부가 증가되고, 재량적발생액의 절대값도 경영자 지배기업보다 더 작게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서로 상반된 가설 중 어떠한 가설이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지배주주의 지분율이 내부통제의 품질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지는 실증적인 문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익침해가설이 우세할 경우, 대주주의 지분율이 증가할수록 경영자는 이익을 증가시켜 보고할 유인이 있어 회계신뢰성이 낮아질 것이므로 내부통제의 품질이 낮을 것이며, 반대로 이해관계일치가설이 우세할 경우, 경영자의 투명한 경영이 기대되므로 회계정보의 신뢰성이 높아져서 내부통제의 질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귀무가설을 설정한다.

가설: 최대지배주주 지분율은 내부통제의 품질과 관련성이 없다.

2. 연구모형

먼저 최대지배주주지분율과 내부통제의 질과의 관련성을 검증하기 위한 모형으로 식 (1)을 이용한다.

$$ICW_{it} = \alpha_0 + \alpha_1 BLOCK_{it} + \alpha_2 NPL_{it} + \alpha_3 LOAN_{it} + \alpha_4 SIZE_{it} + \alpha_5 NI_{it} + \alpha_6 BIS_{it} + \alpha_7 SEOUL_{it} + \sum YD_{it} + \varepsilon \quad (1)$$

여기서,

ICW_{it}	: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점 더미변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중요한 취약점이 있거나 의견표명거절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
$BLOCK_{it}$	: 최대주주지분율
NPL_{it}	: 고정이하여신/기초총자산
$LOAN_{it}$	: 기말대출채권잔액/기초총자산
$SIZE_{it}$	: 기업규모. 총자산에 자연로그를 취한 값
NI_{it}	: 조정전이익/기초총자산
BIS_{it}	: BIS자기자본비율
YD	: 연도더미

식(1)의 종속변수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취약점 보고 여부(Internal Control Weakness: ICW)이며 주요 검증변수는 최대주주지분율(Block shareholder: BLOCK)이다. 이익침해가설이 우세하다면 지배주주의 지분율이 증가할수록 회계투명성이 낮아져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취약점을 보고할 것이므로 BLOCK의 계수추정치(α_1)는 양(+)의 부호를 가질 것이다. 반대로 이해일치가설이 우세하다면 지배주주 지분율이 증가함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취약점을 보고하지 않을 것이므로 BLOCK의 계수추정치(α_1)는 음(-)의 부호를 가질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시된 모형에서는 선행연구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점 보고에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되는 다양한 통제변수가 사용된다. 대표적으로 무수익여신( ), 대출채권( ), 기업규모( ), 조정전이익( ), BIS자기자본비율(BIS)이 설명변수로 포함되었다. 대출채권을 자산건전성분류기준에 따라 구분했을 때,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여신을 합산한 것을 무수익여신(NPL)이라 하는데 이는 미래시점에 대손발생가능성이 가장 높기 때문에 회계정보의 투명성이 낮아져 취약점을 보고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므로NPL의 계수값(α_2)는 양(+)의 값을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대출채권($LOAN$)이 증가하면 일반적으로 대출관리 내부통제시스템이 잘 작동될 것이므로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점 가능성을 낮을 것이다. 하지만 대출채권이 증가하면 의도적인 대손충당금 조정 가능성이 높아져서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점을 보고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이들 중 어떤 것이 더 크게 작용하는가에 따라 α_3의 값은 달라질 것이다.

일반적으로 규모변수($SIZE$)는 정치적비용을 대리하는 변수로 포함되고 있으나 대체적으로 유의한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의 모형에도 포함시켰다. 은행의 규모변수는 일반적으로 자산, 대출채권 등과 같이 은행의 외형을 결정짓는 변수를 사용한다. 은행의 경우 자산의 상당부분을 대출채권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대출채권의 증가는 은행의 잠재적인 성장가능성과 수익성을 가져다준다. 따라서 규모가 클수록 정치적 비용도 크기 때문에 이 비용에 민감한 금융기관의 경영자들은 내부통제시스템을 관리할 것이므로 취약점 보고 가능성이 낮아질 것이다. 따라서 기업규모의 계수값(α_4)은 음(-)의 값을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문현주(2004)에 따르면 대손충당금은 은행의 이익조정수단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즉 조정전이익( )이 높은 경우 이익유연화를 위해 재량성이 높은 기말추가인식 대손상각비를 많이 보고한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대손상각비 설정전 이익이 높을 경우 이익을 조정할 유인이 낮으므

로 재량적 대손충당금이 낮아져 회계정보의 신뢰성이 보다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NI*의 계수값(α_5)이 음(-)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지현미·박홍조(2006)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조정 전 자기자본비율이 목표했던 수준에 미달하는 정도가 클수록 대손충당금 설정률이 더 많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BIS비율이 낮을수록 자기자본비율을 관리하기 위하여 재량적 대손충당금을 작게 설정할 것이므로 회계정보의 신뢰성은 감소하여 취약점 보고 가능성은 증가한다. 따라서 통제변수로 계수값(α_7)은 음(-)의 값을 가질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통제변수들의 이분산성을 통제하기 위하여 모두 기초총자산으로 나눈값을 이용하였다. 또한 각 연도별 차이를 통제하기 위하여 연도더미(YD)도 추가하였다.

3. 자료수집 및 표본선정

본 연구의 분석대상기간은 2006년에서 2012년까지 이고, 재무자표는 KIS-Value에서 수집하였으며 표본기업은 2013년 3월말 기준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상호저축은행으로 하여 표본선정기준을 적용하여 선정하였다.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에서 분석에 필요한 기타 재무자료가 없는 기업들, 최대주주 지분율이 공시되지 않거나, 최대주주가 없는 경우 등을 제외한 결과 최종적으로 표본에 포함된 기업-연도는 502개이다.

<표 2> 표본선정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계
최초표본	107	108	107	106	106	105	98	737
차감								
① 내부회계관리제도검토의견 미첨부 또는 감사보고서 미공시 기업	12	10	8	14	26	35	38	143
② 최대주주지분율및기타재무자료가공시되지않은기업	15	14	12	13	14	11	13	92
최종표본	80	84	87	79	66	59	47	502

Ⅳ. 실증분석 결과

1. 기술통계량

<표 3>은 본 연구에 포함된 표본기업의 내재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점 공시여부, 대주주지분율 기타 변수에 대한 기술통계량을 표시한다. 각 극단치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하여 기업특성변수의 측정치를 각각 1%와 99% 수준에서 조정(winsorization)하였다. 종속변수인 ICW의 평균이 0.2171로 표본기업의 21.7%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중요한 취약점나 의견표명을 거절한 기업이다. 주요검증변수인 BLOCK의 평균은 0.6302(중위수, 0.5471)로 표본기업의 최대주주지분율의 평균은 63.02%이고, 최대주주지분율이 가장 작은 기업이 8.4%, 가장 많은 기업은 100%로 상호저축은행의 지배주주지분율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저축은행은 애초부터 일반은행과 달리

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규제가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인한 결과라 할 수 있다.

<표 3> 기술통계량

	Mean	Min	Median	Max	Std.Dev.
ICW_{it}	0.2171	0.0000	0.0000	1.0000	0.4127
$BLOCK_{it}$	0.6302	0.0844	0.5471	1.0000	0.5852
NPL_{it}	0.0962	0.0002	0.0976	0.4400	0.0657
$LOAN_{it}$	0.7758	0.0500	0.7929	2.1600	0.2368
$SIZE_{it}$	26.4363	23.8500	26.1891	29.3700	1.0269
NI_{it}	0.0030	-0.2900	0.0081	0.2400	0.0356
BIS_{it}	13.3168	-19.210	10.770	108.110	11.6983
$SEOUL_{it}$	0.5179	0.0000	1.0000	1.0000	0.5002

(주) 변수 정의

ICW_{it} : 내부회계관리제도 부적정 더미변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중요한 취약점이 있거나 의견표명거절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

$BLOCK_{it}$: 최대주주지분율

NPL_{it} : 고정이하여신/기초총자산

$LOAN_{it}$: 기말대출채권잔액/기초총자산

$SIZE_{it}$: 기업규모, 총자산에 자연로그를 취한 값

NI_{it} : 대손충당금전입액 설정전 이익/기초총자산

BIS_{it} : BIS자기자본비율

$SEOUL_{it}$: 저축은행의 본점이 수도권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

YD : 연도더미

통제변수인 NPL의 평균은 0.0962(중위수: 0.0976)이며, LOAN의 평균은 0.7758(중위수: 0.7929)이고, SIZE의 평균은 26.4363(중위수: 26.1891)이다. NI의 평균은 0.0030(중위수: 0.0081)이며 BIS의 평균은 13.3169%(중위수: 10.77%)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변수들은 대칭적인 분포를 이루고 있다.

2. 상관관계 분석

<표 4>는 변수들의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종속변수인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점(ICW)과 최대주주지분율(BLOCK)의 상관관계는 0.142로 유의적인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이는 대주주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점 공시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잠정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통제변수 중 BIS자기자본비율(BIS)은 ICW와 유의한 양(+)의 상관성이 존재하고, 대출채권($LOAN$), 기업규모($SIZE$)와 조정전이익(NI), 수도권여부($SEOUL_{it}$)는 ICW와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표 4> 변수간의 상관관계

	ICW_{it}	$BLOCK_{it}$	NPL	$LOAN$	$SIZE$	NI	BIS
$BLOCK_{it}$	0.142***	1.000					
NPL	0.051	0.018	1.000				
$LOAN$	-0.219***	-0.051	-0.060	1.000			
$SIZE$	-0.172***	-0.026	0.075	0.200***	1.000		
NI	-0.201***	-0.095*	-0.556***	0.312***	-0.005	1.000	
BIS	0.149***	0.054	-0.319***	-0.275***	-0.389***	0.213***	1.000
$SEOUL_{it}$	-0.101*	-0.021*	0.031	0.200***	0.558***	0.116***	-0.023

주1) 위에 표시된 상관관계는 pearson 상관관계를 나타냄.
*,**,*** 는 각각 1%, 5%, 10%수준에서 유의함(양측검정)
주2) 변수 정의는 <표 1>을 참조

3. 다변량 로짓분석

<표 5>는 본 연구의 가설인 지배주주지분율과 내부통제의 품질과의 관련성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를 표시한다. 이익침해가설이 우세하다면 지배주주의 지분율이 증가할수록 회계투명성이 낮아져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취약점을 보고할 것이므로 BLOCK의 계수추정치(α_1)는 양(+)의 부호를 가질 것이며, 반대로 이해일치가설이 우세하다면 지배주주 지분율이 증가함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취약점을 보고하지 않을 것이므로 BLOCK의 계수추정치(α_1)는 음(-)의 부호를 가질 것으로 예상하였다.

<표 5>의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BLOCK의 계수값은 0.01(Wald χ^2=5.234)로 종속변수인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점 더미변수인 ICW에 5%수준에서 유의적인 양(+)의 값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최대주주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점 보고가능성이 높아지며 결과적으로 이익침해가설이 우세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저축은행의 최대주주지분율이 높을수록 지배권 남용과 도덕적 해이 가능성이 높아져서 법정 한도를 초과하여 개별차주들에게 거액의 신용을 제공하거나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 대주주 본인에게 신용을 공여하고 자기사업을 영위함으로서 부실위험을 확대시키고, 이러한 불법행위들을 다단계 자금세탁이나 회계기록 등을 통해 은폐함으로써 기회주의적인 조정이 가능하여 결국 내부통제의 품질을 하락시켰다는 주장(이시연, 2012)에 대한 실증적인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한편 대출채권(LOAN)의 계수값은 -1.282로 10%수준에서 유의하였다. 이것은 대출채권이 증가하면 일반적으로 대출관리 내부통제시스템이 잘 작동될 것이므로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점 보고 가능성이 더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기업규모의 계수값은 -0.328로 5%수준에서 유의한 음의 값을 보이고 있다. 규모가 클수록 정치적 비용도 크기 때문에 이 비용에 민감한 금융기관의 경영자들은 내부통제 시스템을 관리할 것이므로 취약점 보고 가능성이 낮아질 것이다.

또한 조정전이익의 계수값은 -15.627로 1%수준에서 유의한 음(-)의 값을 보여 조정전이익이 높을수록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취약점 보고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조정전이익이 높을 경우 재량적대손충당금도 증가하여 이익을 감소시킨다는 문현주(2004)의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BIS비율과 본점의 수도권여

부(SEOUL)는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못하였다.

<표 5> 로짓분석 결과

$$ICW_{it} = \alpha_0 + \alpha_1 BLOCK_{it} + \alpha_2 NPL_{it} + \alpha_3 LOAN_{it} + \alpha_4 SIZE_{it} + \alpha_5 NI_{it} + \alpha_6 BIS_{it} + \alpha_7 SEOUL_{it} + \sum YD_{it} + \varepsilon$$

Variable	Sign	coefficient	Wald χ^2 value
Intercept		7.812	3.354*
$BLOCK_{it}$	(?)	0.010	5.234**
NPL_{it}	(+)	1.656	0.408
$LOAN_{it}$	(?)	-1.282	3.666*
$SIZE_{it}$	(-)	-0.328	4.224**
NI_{it}	(-)	-15.627	0.003***
BIS_{it}	(-)	0.017	1.872
$SEOUL_{it}$	(-)	0.045	0.023
Likelihood Ratio χ^2		463.067***	
Pseudo R^2		0.117	
obs.		502	

주1) 변수 정의는 <표 1>을 참조

V. 결 론

상호저축은행은 서민의 금융기관으로서 일반은행에 비하여 규모가 작고 자체 신용평가시스템의 보유미비, 신용보증기관의 일반은행으로서의 보증업무 국한, 리스크 매니지먼트의 전문성 결여 및 대출채권의 높은 대손가능성 등의 경영상의 취약점을 안고 있다. 또한 일부 개인, 일부 법인에 지분이 집중된 기형적인 지배구조로 소유자경영자의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상호저축은행의 영업정지 등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일반기업과 달리 그로 인한 이익의 침해는 소액주주 이외에도 다수의 예금자, 정부, 일반 국민들도 잠재적인 피해를 볼 수 있고 그로 인한 사회적비용은 일반기업보다 훨씬 크다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상호저축은행 자체적으로는 내부통제시스템이 적절히 설계되고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되어야 하며 감독당국에서는 금융감독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상시적으로 적정수준의 내부통제 품질을 관리하여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상호저축은행 대상으로 최대주주 지분율이 기업의 내부통제의 품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 최대주주지분율은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점 공시에 유의적인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최대주주지분율이 높을수록 회계투명성이 저하되어 내부통제의 질이 낮아져서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점 보고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저축은행의 부실 경영에 대한 중요한 원인이 대주주 및 경영진의 사적이윤 추구를 위한 불법 부당한 저축은행 사금고화 함으로써

결국 내부통제의 품질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실증적인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 저축은행을 감시하고 견제해야하는 내·외부 통제환경 및 통제절차가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이에 대한 감독당국 및 시장의 감시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본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고문헌

1. 고숭용(2005), "상호저축은행의 내부통제방안: 소유·지배구조를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 김용식·황국재·김유찬(2007), "기업의 경제적 특성과 지배구조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품질에 미치는 효과", *회계와감사연구,* 46, 249-275.
3. 문현주(2004). "개별발생액접근법을 통한 은행의 이익관리 연구", *회계학연구,* 29(2), 111-131.
4. 박승식·장지인·정길채·배성태(2006), "기업지배구조와 이익조정의 관련성에 대한 실증연구", *회계정보연구,* 24(1), 213-241.
5. 박종일(2003), 기업지배구조와 이익조정: 최대주주 지분율을 중심으로. *회계학연구,* 28(2), 135-172.
6. 신성욱(2015), "기업지배구조가 비대칭적 원가행태에 미치는 영향", *경영과 정보연구,* 34(2), 196-206.
7. 신현걸(2007),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보고 현황 분석", *회계저널,* 16, 107-128.
8. 안홍복(2004), "지배주주의 지배-소유권 차이와 이익조정의 관련성 분석", *회계학연구,* 29(4), 117-154.
9. 안홍복·서란주(2013), "기업지배구조와 이익조정: 주요대주주와 지배권경쟁가능성을 중심으로", *회계학연구,* 38(1), 43-85.
10. 정구열·권수영·백원선(2002), "기업소유구조와 이익의 정보효과", *경영학연구,* 31(6), 1707-1727.
11. 이시연(2012), "저축은행 소유구조 개선의 필요성", *한국금융연구원(KIF)* 21(4), 3-9.
12. 지현미·박홍조(2006), "국내 상호저축은행의 대손충당금을 이요한 자기자본비율 조정", *회계저널,* 15, 23-44.
13. 최미화(2012), "고객중요성, 기업소유구조와 감사품질의 정보효과", *경영정보연구,* 31(1), 221-246.
14. 최성규·김경민(2001), "소유와 경영의 분리와 경영자의 이익조절", *회계학연구* 26(1), 153- 75.
15. Berger Allen N., I. Bjorn and R. Christian(2014), "The roles of corporate governance in bank failures during the recent financial crisis", Working paper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16. Christie, A., M. Joye, and R. Watts(1993), "Decentralization of the firm: theory and evidence", Working paper(University of Rochester).
17. Cole R. A. and L. J. White(2012), "Déjà Vu all over again: The causes of U.S. commercial bank failures This time around", *Journal of Financial Services Research,* 42(5), 5-29.
18. Cornett M. M., Jaime J. M., and Hassan T.(2009), "Corporate governance and earnings management at large U.S. bank

holding companies", *Journal of Coporate Finance,* 15, 412-430.

19. Doyle, J., W. Ge, and S, NcVay(2007), "Accruals quality and internal control over financial reporting, Determinants of weaknesses in internal control over financial reporting", *The Accounting Review,* 85(5), 1141-1170.
20. Fan, J. P. and T. J. Wong(2002), "Corporate ownership structure and the informativeness of accounting earnings in East Asia",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33, 401-425.
21. Ge, W., and S. Mcvay(2005), "The disclosure of material weaknesses in internal control after the Sarbanes-Oxley Act", *Accounting Horizons,* 19, 137-158.
22. Jensen, M. C. and W. H. Meckling(1992), "Specific and general knowledge, and organizational structure, in: Lars Werin and Hans Wijkander. eds.", *Contract Economics*. 9: 251-274.
23. La Porta, R., F. Lopez-De-Silanes, A. Shleifer, and R. Vishny(1999), "Corporate ownership around the world", *Journal of Finance,* 54, 471-518.
24. La Porta, R., F. Lopez-De-Silanes, A. Shleifer, and R. Vishny(2000), "Investor protection and corporate governance", *Journal of Finance,* 58, 3-27.
25. Morck R., A. Shleifer, and R. W. Vishny(1988), "Management ownership and market valuation: an empirical analysis",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20, 293-315.
26. Shleifer, A and R, Vishny: A Survey of Corporate Governance, *Journal of Finance*, 52, 737-783(1997)
27.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14.07.03.)

Abstract

The Impact of Block shareholder on Quality of Internal Control in Korea's Mutual Savings Banks

Yu, Soon-Mi*

Mutual Savings Banks generally have weaker governance structure than other financial institutions, so the possibility of earnings management by owner-largest or managements of mutual savings banks is higher than other financial institutions.

This study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corporate governance and quality of internal control of financial reporting. If the expropriation of minority shareholder hypothesis holds, we predict that the larger block shareholder in mutual savings banks, the weaker the internal control system by more likely the opportunistic earnings management by bank managers. On the other hand, under the convergence of interest hypothesis, we predict that the larger block shareholder in mutual savings banks, the stronger the internal control system by reduction in agency costs as owner-manager's holdings increases, and there a negative relationship is expected between internal control weakness and the holdings of the owner-largest shareholder.

We find that mutual savings banks with higher owner-largest shareholder equity has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 with their internal control of financial reporting material weakness. This result suggests that the greater owner-largest shareholder equity, the more likely the opportunistic earnings management, so that decrease quality of internal control. This paper extends the literature on financial institutions corporate governance to verify whether governance system, especially, owner-largest and quality of internal control has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

Key Words: Mutual Savings Bank, Corporate Governance, owner-largest shareholder, The weakness of internal control for financial reporting

*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Accounting, College of Business Administration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BERI, smyu@gnu.ac.kr